

의안
번호

428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
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
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1. 11. 24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이 인 순 의원 외 10인

나. 의안번호 : 제428호

다. 제출일자 : 2021. 11. 16.

라. 회부일자 : 2021. 11. 17.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(아동학대처벌법)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구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아동복지법 제17조(금지행위) 및 제23조(학대예방의 날) 등 상위법령에 근거함에 있어 나열 및 중복적 성격의 조례 정비
- 나. 아동복지법 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 제4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관련 조례안 신설
- 다. 아동학대 신고 112 일원화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등에 따라 개정
- 라. 아동복지법 제12조(아동복지심의위원회) 관련 우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등 운영함에 있어 조례 제7조(지역연대의 설치) 개정
- 마. 아동복지법 제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, 제26조2(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) 개정에 따른 조례 제10조(교육) 개정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1. 11. 16. ~ 2021. 11. 21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 등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아동복지법」 과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(이하 “아동학대처벌법 이라 함”) 개정으로, 아동학대 의심신고 접수, 조사, 응급조치 등 대응 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법률에 규정된 조항을 신설·정비하기 위한 것임.

□ 주요개정 내용

- 안 제1조(목적)는 2013년 6월 본 조례 최초 제정 이후 「아동학대처벌법」 이 2014년 1월 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기존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에서 「아동학대처벌법」 으로 변경한 것이며,

〈안 제1조 개정 전·후 비교〉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	제1조(목적) -----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-----

- 안 제3조(금지행위)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(금지행위)에 아동학대 금지행위를 나열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중복된 제1호부터 11호 부분을 삭제한 것임.
- 안 제4조(책무)제3항은 구청장의 책무규정에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,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추가한 것이며,

- **안 제5조(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) 신설 사항**은 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토록 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한 것임.

< 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 >

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(이하 “아동학대전담공무원”이라 한다)을 두어야 한다. <신설 2020. 4. 7.>

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- **안 제6조(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)제1항 및 제2항**은 「아동학대처벌법」 제10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고접수의 주체를 ‘아동보호전문기관’에서 ‘성북구’로 ‘신고’를 ‘즉시신고’로 변경하여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며,

<안 제6조 개정 전·후 비교>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)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<u>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</u>에 신고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법 제25조제2항</u>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<u>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</u>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) ①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북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</p> <p>②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에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성북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

- **안 제7조(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)**는 기존 조례에 명시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대상에 「아동복지법」에서 명시된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한 것임.
- **안 제8조(위원회 설치)**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심의·자문을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두되, 심의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「아동학대처벌법」 제정 이전 설치·운영한 기존 제7조의 지역연대 설치는 「아동복지법」 개정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 연계성이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이며,

<안 제8조 개정전·후 비교>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지역연대의 설치) ①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(이하 “지역연대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(삭제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(삭제)</p>	<p>제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,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대예방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.</p>

- **안 제9조(시행계획 수립 등)제3항 및 제4항**은 아동예방위원회의 설치·운영 규정이 안 제8조(위원회의 설치)에 마련됨에 따라 기존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련하여 지역연대에 보고·자문 및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규정을 삭제한 것임.

〈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개정전·후 비교〉

현 행	개 정 안
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연대에 보고를 하고, 자문을 받아야 한다.	<삭 제>
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에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	<삭 제>

- **안 제12조(홍보)**는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존 ‘지역신문, 유선방송 전문기관홈페이지 등’을 ‘각종 홍보 매체’로 수정하고 기존 제13조의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안 제12조로 통합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이며,
- **안 제13조(비밀준수의 의무)**는 「아동복지법」 제65조 및 「아동학대처벌법」 제35조를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자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아동학대 대응 직무 수행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조문을 신설한 것임.
- **그 밖에 제12조(아동정책 모니터링)**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조례」 제2조(기능)의 심의사항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어 원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,
- **제14조(관련정보의 제공)**는 아동학대 관련 비밀준수의 의무 규정을 고려하고, 개정안 제12조(홍보)에 아동학대 예방 및 홍보 관련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원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아동학대 대응체계개편에 따른 「아동복지법」 과 「아동학대처벌법」 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전부개정형식으로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,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.